

제183회 충청북도의회(임)

2001. 1. 18
교육사회위원회

檢 討 報 告 書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教育社會委員會 專門委員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결과보고

2001. 1. 18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2. 제안 및 회부일자

○ 제안 : 2000년 11월 29일 제출

○ 회부 : 2000년 11월 30일

3. 제안이유

○ 각 기능별로 설치·운영해오던 재해구호기금, 노인복지기금, 장애인복지기금,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자립장학기금을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관리·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

○ 기금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○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을 설치·운영(제1조)

○ 기금의 재원은 도의 출연금,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, 중앙정부의 보조금, 기금의 운용수익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함(제2조)

○ 기금의 지원사업은 재해구호사업, 노인복지 지원사업, 장애인복지 지원사업,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자립장학금 지원으로 함(제3조)

○ 기금은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·운영 함(제4조)

○ 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사업운용위원회를 설치·운영(제5조)

-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함(제7조)
- 노인복지지원사업은 노인교육과 취미활동 지원, 노인단체사업의 지원,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등으로 함(제8조)
- 장애인복지지원사업은 장애인의 권익신장,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, 장애인단체사업의 지원,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으로 함(제9조)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자립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스급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교 학생과 기타 수급권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교 학생으로 함(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각 기능별로 설치·운영해오던 재해구호기금, 노인복지기금, 장애인복지기금,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을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관리·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
- 기금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다만 통합·운영에 따라 예상되는 기금관리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